

# 코로나19 대응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안내

“ 근로자와 사업주의 든든한 동반자! ”



고용장려금 문의처 : (국번없이) ☎ 1350

\* 각종 서식자료는 수원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www.work.go.kr/suwon](http://www.work.go.kr/suwon) ▶ 정보마당 ▶ 서식자료실



# 01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개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피해 사업장의 경우에는 일부 요건 완화 적용

**기존 사업개요**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 지원

\* 재고량 50% 증가, 생산량·매출액 15% 감소 등 일정요건 충족 시 지원 가능

**특별지원** 매출액 15% 감소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인정되는 경우 지원대상 인정 (\*20.1.29 ~ 「국가감염병위기경보」 해제시까지)

## 지원대상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기업

- 예시업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업 서비스업, 숙박업, 보건업(병·의원 등) 등
- 위 예시업종 외에도 코로나19로 인해 피해입증이 가능한 경우 지원대상 인정
- 코로나19 피해입증이 어려운 경우 기존 요건(매출액 15%감소 등) 충족시 지원대상 인정

## 지원조건



전체 근로시간의 20% 초과하여 휴업 실시

\* (실시한 달 6~4개월전 평균 총근로시간 대비) 달력상 1개월 단위의 전체 피보험자 총 근로시간의 20% 이상↓



1개월 이상 휴직 실시

## 지원내용

한시적 지원수준 상향(\*20.2.1.~7.31)

-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휴직 수당의 최대 3/4까지(1일 상한액 6.6만원, 연 180일 이내)

\* 지원비율 : 우선지원대상기업 3/4, 그 외 2/3

## 신청절차



↳ 휴업·휴직 실시 하루 전까지 제출

## 01.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개요

#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주요 FAQ



### Q1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를 받으셨나요?

**A**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장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여행사 및 기타 여행업, 이벤트·공연업, 학원업, 숙박업, 보건업(병원 등)의 업종은 예약취소증, 휴업권고서 등 관련 내용을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조업의 경우 원자재수급차질 등 관련 내용을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 기타 업종의 경우에도 코로나바이러스로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할 서류를 제출하실 경우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Q2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입증이 어려운 경우, 매출감소가 있으신가요?

**A** 기준달의 매출액이 ①기준달의 직전연도 같은 달의 매출액 또는 ②기준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매출액 또는 ③기준달의 직전 연도 월평균매출액 대비 15% 이상 감소한 경우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준달이란? 고용유지조치 실시 첫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달

### Q3 휴업, 휴직 근로자들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하셨나요?

**A**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 후 이에 따른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시고, 휴업, 휴직근로자들에게 70% 이상의 휴업수당과 휴직수당을 지급 하셔야 고용유지지원금신청이 가능합니다.

### Q4 휴업과 휴직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사업장을 닫아야 하는 건가요?

**A** 아닙니다. 사업장을 운영하더라도 전체 근로시간의 20% 이상을 초과 하여 휴업을 실시 하거나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Q5 지원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A 먼저, 경영 악화 등으로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를 실시하기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후 고용유지조치 계획에 따라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하고 휴업·휴직 수당을 지급하셔야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Q6 고용유지 신청하고 감원을 해도 지원이 되나요?

- A 해당 사업장의 모든 노동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계속 고용해야 하는 기간은 최소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첫날부터 고용유지조치 종료일 이후 1개월까지를 의미합니다.

### Q7 “고용유지조치계획서”는 언제 제출해야 하나요?

- A 휴업·휴직을 실시하기 하루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휴업은 달력상 월에 의한 1개월 단위(예시: 1.1~1.31)로 제출해야 하며, 휴직은 1개월 단위\*로 제출해야 합니다.  
\* (예시) 1.19~2.18(실제 휴직이 실시되는 기간)



### Q8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이미 신고하였는데, 계획대로 휴업·휴직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변경된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를 실시하기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 변경 신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Q9 다른 지원금사업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 A 고용유지조치(휴업, 휴직) 대상자에 대해서는 고용촉진장려금, 고용창출장려금, 청년추가 고용장려금 등을 중복지원 받으실 수 없습니다.

## 02 유연근무제 지원 개요

### 지원유형

시차  
출퇴근제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선택  
근무제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재택  
근무제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제도

원격  
근무제

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하거나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하는 제도

### 지원대상

소속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유연근무제 사용을 허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 지원요건

- 근로자가 유연근무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취업규칙, 인사규정 등)를 마련하고,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관리  
\* 코로나19에 대응하여 한시적으로 ‘재택근무’는 이메일, 모바일 메신저를 통한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각을 사업주에게 보고하는 방식도 인정
- 소정근로시간이 주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일 것

### 지원내용

근로자의 주당 유연근무제 활용횟수에 따라 1년간 최대 520만원 지원

\*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한도 내에서 최대 70명 지원 (시차출퇴근제는 최대 50명)

#### < 지원기준 >

기준	연간 총액		1주당 지급액	
	주 3회 이상	주 1~2회	주 3회 이상	주 1~2회
지원금액	520만원	260만원	10만원	5만원

# 03 가족돌봄비용 지원방안

## 지원대상

- 아래와 같은 사유로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대기업, 공공기관 포함)
-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확진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유치원·학교가 코로나19 관련 휴원·휴교·개학연기된 경우
    -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등(원)교중지 조치를 받은 경우
    -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

## 지원기간

- 근로자 1인당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5일 이내 지원
- 외벌이(5일 이내), 맞벌이(최대 10일), 한부모(10일 이내)

## 지원금액

- 1일 5만원 (부부합산 최대 50만원 지원)
-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 (단, 4시간 이하는 2.5만원 일괄 지원)
  - 사업장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전액 유급으로 부여한 경우 지원 제외

## 신청방법

- 근로자 직접 신청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 → 민원신청 → '가족돌봄 휴가' 검색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신청기간

- '20. 3. 16부터 신청 가능
- 국내 첫번째 코로나19 확진 판정('20.1.20.) 이후 사용한 가족돌봄휴가까지 소급하여 지원



### 가족돌봄휴가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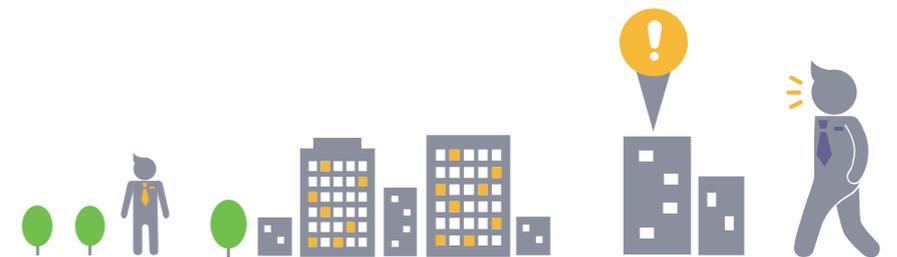
올해 1월 1일부터 근로자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및 자녀의 양육의 사유로 연간 최대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근로자는 사용하려는 날, 돌봄 대상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신청연월일 등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가족돌봄비용 전담문의 | [수원] 231-7940, 7850, 7887 [용인] 289-2227, 2255 [화성] 290-0828

# 04 기타 고용장려금 안내

## 지원안내

일자리함께하기 지원 (주근로시간단축제)	주 최대 52시간제 도입에 따라 주근로시간 단축하고 근로자 추가 고용시 인건비 지원 ▶ 증가근로자 1인당 월 최대 80만원 ▶ 기존 재직자 임금보전 인당 월 최대 40만원
신중년적합직무고용 직원지원	신중년적합직무에 만50세 이상 실업자 고용시 인건비 지원 ▶ 1인당 월 최대 80만원
고령자계속고용 장려금	정년이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제도 연장, 폐지 및 재고용제도 도입시 인건비 지원 ▶ 정년 이후 계속고용된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	정년 미설정 사업장에서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60세 이상 고령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을 초과고용시 인건비 지원 ▶ 지원기준을 초과 인원 1인당 분기별 30만원
고용촉진 장려금	중증장애인, 가족부양 책임이 있는 여성 실업자,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고용시 인건비 지원 ▶ 인당 월 최대 60만원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청년을 고용하여 전체 근로자수 증가시 인건비 지원 ▶ 인당 월 최대 75만원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 본인의 필요에 의해 소정근로시간 단축한 경우 간접노무비 지원, 대체인력 고용시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 간접노무지 인당 월 20만원 ▶ 대체인력인건비 인당 월 최대 60만원





## 경기남부권

(고용노동지청 / 고용센터 관할구역 안내)

인재채용, 기업지원제도, 노무관리 등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각종 제도에 대해 궁금한 내용이 있는 기업은 '지방고용노동관서'로 연락주세요.

안양지청·안양고용복지+센터  
(광명시, 안양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안양지청·안양고용복지+센터  
(안산시, 시흥시)

경기지청·수원고용복지+센터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성남지청·성남고용복지+센터  
(성남시, 하남시, 이천시, 광주시, 여주시, 양평군)

평택지청·평택고용복지+센터  
(평택시, 오산시, 안성시)



경기고용노동지청